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시 현 정책 수요 반영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여성농업인육성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육성시의회'로 변경(법 제7조)하는 내용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8533호, 2021.11.30. 공포·2022.6.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의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명칭도 '심의회'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명칭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3. 관련예상쟁점

가. 관계부처 입장 : 해당 없음

나. 관련 단체 등 입장 : 해당 없음

다. 쟁점 대응방안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추진일정(안)

1) 개정안 확정 : '22.2월

2) 관계부처 협의 : '22.2월

3) 입법예고 : '22.3~5월

- 4) 법제처 제출 : '22.5월
- 5) 공포 : '22. 6. 1.
- 나. 관련규제 검토사항 : 해당 없음
- 다. 재정수반 여부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개정령안 별첨
- 2) 법안담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등)"을 "(여성농업 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구성 등)"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각 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각 심의회""로, "자문회의를"을 "심의회를"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회의의 부위원장"을 "심의회의 부위원장"으로, "자문회의의 위원장을"을 "심의회의 위원장을"로, "자문회의의 위원장이"를 "심의회의 위원장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문회의의 위원장"을 "심의회의 위원장"으로, "자문회의의 회의"를 "심의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한다.

제8조 중 "자문회의의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자문회의의 의결"을 "심의회의 의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혀 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 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의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 의 구성 등) ① ---------- 여성농업인육성정책 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심의회----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 | 제3조의2(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 문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 의회의 구성 등) ① ---------- 여성어업인육성정 제1항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 책심의회-----정책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여성농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여성농 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여성 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 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각 "각 자문회<u>의"</u>라 한다)의 위원 심의회"---------- 심<u>의회를</u> -----장은 해당 자문회의를 대표하 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자문회의의 부위원장은 ② -- 심의회의 부위원장----해당 자문회의의 위원장을 보좌 --- 심의회의 위원장을 -----하며, 해당 자문회의의 위원장 ----- 심의회의 위원장이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① 각 <u>자문회의의 위</u> <u>원장</u>은 해당 <u>자문회의의 회의</u>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각 <u>자문회의</u>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① 각 <u>자문회의</u>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 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 담당 과장
 - 2. <u>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u> 의: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육 성 업무 담당 과장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u>자문회의</u>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다.
- 제7조(수당 등) 각 <u>자문회의</u>에 출 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

<u>.</u>
· 제5조(회의) ① <u>심의회의 위원</u>
<u> 장 심의회의 회의</u>
 제6조(간사) ① <u>심의회</u>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2. <u>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u>
② <u>심의회</u>
제7조(수당 등) <u>심의회</u>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	
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	제8조(운영 세칙)
된 사항 외에 각 <u>자문회의의 운</u>	<u>심</u> 의회의 운영-
<u>영</u>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u>자문</u>	<u>심의</u>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	회의 의결
장이 정한다.	